

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 - 36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12.

제 출 자 : 박수호의원외 3인

☐ 제안이유

- 2001년 7월 9일 개정공포된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산업단지내 건축물은 타 공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공장은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가. 별표2, 7의 기타건축물중 산업단지내의 건축물을 공장으로 변경하여 타 공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(안 별표2)
- 나. 산업단지내 건축물을 포함한 공장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적용함으로써 공업시설의 부담을 덜어줌(부칙)

☐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☐ 관련법령 발췌서 : 따로 붙임

-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, 제3항
-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, 제1항 및 제2항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설치기준란의 “산업단지내건축물”을 “공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화된 개정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(별표2)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		(별표2)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	
시설물	설치기준	시설물	설치기준
7. 기타건축물	시설면적 250제곱 미터당 1대 단, 산 업단지내 건축물 을 300제곱미터당 1대	7. 기타건축물	----- -----공장은----- ----- -----